

첨부 : 개정안 내용

1. 서울연구원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개정(안)

- 금품수수 제한범위 확대 -

부패인프라 구축 및 부정 수수 및 청탁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금품 등의 수수제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개정하고자 함.

추진근거

반부패인프라 구축

- 투자출연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계획(감사담당관-6435, 2015.4.27.)

주요내용

서울연구원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개정(안)

- 금품 등의 수수제한 범위 확대

· 직무 관련자이었던 자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 시 처벌

⇒ 직무관련 여부나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수수나 요구 또는 약속시에도 처벌

붙임 : 신규대조문 참조

신구조문대조표

현 행	개 정 (안)
<p>제13조(금품 등의 수수제한) ③직무 관련자이었던 자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. 다만,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	<p>제13조(금품 등의 수수제한) ③직무 관련여부 및 기부·후원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체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을 해서는 아니된다. 다만,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

2. 청렴신고센터 운영 지침 일부개정(안)

- 센터 조회자 및 신고자 불이익 구제신청 절차 -

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해 청렴신고센터 운영지침 중 센터 조회자 개정 및 신고자 불이익 구제신청 절차를 신설하고자 함.

추진근거

반부패인프라 구축

- 투자출연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계획(감사담당관-6435, 2015.4.27.)

주요내용

청렴신고센터 운영지침 일부개정(안)

- 센터 조회자 개정

· 감사업무부서장 ⇒ 원장

- 비리 신고자 불이익 구제신청 조항 신설

· 비리 신고자 불이익 구제 신청

붙임 : 신규대조문 참조

신구조문대조표

현 행	개 정 (안)
<p>□ 비리신고센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운영방법 <p>-2단계 보고체계 : 조회는 <u>감사업무</u> 부서장인 <u>경영지원팀장만</u> 가능하며, 신고사항 및 조사결과는 원장에게 직접 보고</p>	<p>□ 비리신고센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운영방법 <p>-2단계 보고체계 : 조회는 <u>원장만</u> 가능하며, 원장은 조사가 필요한 경우 <u>조사를 할 수 있다.</u>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 설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<u>비리 신고자 불이익 구제 신청</u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<u>비리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은 경우 불이익 조치금지 및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(이하 ‘보호조치’라 한다.)</u>를 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, 원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<p>□ 클린신고센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신고방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오프라인 신고 : <u>경영지원팀장</u> ○ 운영방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보고체계 : 온·오프라인신고는 <u>경영지원팀장이</u> 접수하여 처리 	<p>□ 클린신고센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신고방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오프라인 신고 : <u>원장</u> ○ 운영방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보고체계 : 온·오프라인신고는 <u>원장이</u> 접수하여 <u>감사부서장에게</u> 처리 지시